

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9. 4 . 12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. 4.26

다. 상정일자 : 1999. 4.26 .제65회 평창군의회(임사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(제4조)

-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
-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는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.
-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예산지원

나. 수탁기관의 선정(제6조)

-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

다.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제7조)

- 위원회는 6 ~ 7인으로 구성
- 군수가 임명, 심사후 자동해산
-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라. 협약체결등(제10조)

- 수탁기관 선정후 수탁기관과 협약(공증)
- 협약서(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협약내용)

마. 지휘감독(제11조)

- 필요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
-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

바. 이의신청(제13조)

- 민간위탁사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
이내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

사. 처리상황의 감사(제14조)

- 군수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년1회 감사
- 위법 부당시 수탁기관에 시정조치

4. 검토 의견

■ 먼저 관계법을 검토하여 보면

- 지방자치법제95조(사무의위임등)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
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
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
직접 관련되는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
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, 조례설치 근거는
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,

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지방자치법에서 위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업무중 자치단체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할 경우는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수탁기관의 선정은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임명하여 6 ~9인 이내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 있음
-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필요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, 군수는 년1회 이상 위탁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
■ 종합검토 결과

- 정부의 과감한 민간이양 의지반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군정의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급한 조례로 판단되며
- 기타 관련법 및 자구등에는 별문제점이 없음.